

2019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대한민국 실시 모집요강

* 대한민국 응시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할 것. (규년 시험 실시, 2019년도부터 장학금 지급)

* 일본 문부과학성의 모집요강을 기본으로 대한민국 내 실시 요강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연구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 대학에서,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연구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연구 유학생의 정의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자, 비정규생으로 대학의 학부, 대학원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서 과정의 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는 자 및 이에 앞서 일본어 등 예비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영리더 프로그램 유학생 및 교원 연수 유학생을 제외한다)

2. 모집분야

응모자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관련된 분야이고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분야로 한다.

단, 각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이 해당 국가 별로 특정 모집 분야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부끼나 일본 무용 등의 전통 예능, 공장 등에서의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근거,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는, 진료, 수술 등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덧붙여, 복수 또는 부전공 등의 분야로 응시할 경우 그와 관련된 이수한 과목 등을 성적증명서에 형광색 등으로 체크해서 제출해야 한다.

3.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간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의 자격 및 조건에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 국적: 일본정부와 국교 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 근거지를 둔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에 한하여 일본 입국 시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국적을 포기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 1차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재외 공관에서 실시한다.

(2) 연령: 원칙적으로 **1984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3) 학력: 일본의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전기) 또는, 박사과정(후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 (입학 전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를 포함.)

아래 어느 한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1. 석사과정, 박사과정(전기)

- ①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자
- ② 대학 개혁 지원, 학위수여기구(NIAD-QE)에 의해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 ③ 외국의 학교 교육에서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 ④ 외국의 대학, 외국에 있는 학교 중,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수업 기한이 3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학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⑤ 일본에서 외국의 대학과정으로 지정된 교육 시설의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 ⑥ 지정된 전문학교를 수료한 자
- ⑦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 자격 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세에 이른 자

2. 박사과정(후기)

- ① 일본의 석사학위나 전문직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 ② 외국에서 석사학위나 전문직 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③ 일본에서 외국의 대학원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정된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나 전문직 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④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연구소/외국의 대학, 연구소를 포함 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속한 자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 자격 심사에 의해, 석사학위 또는 전문직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4세에 이른 자

3. 박사과정(의학, 약학, 일부 약학과정, 수의학)

의학, 약학, 일부 약학과정, 수의학 과정에 출원할 때에는, 출원 전에 각 대학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주 1) 학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모 신청서에 소속 대학관계자 등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4)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일본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가질 것.

- (5)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6) 출발 시기 : 일본 입국 시기는 하기의 하나로 하고, 희망하는 시기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입국 시기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사정에 의해 하기 기일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사퇴할 것.
 - ① 4월 :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사이. 거주지에서의 출발도 4월 1일 이후로 한다.
 - ② 10월 : 원칙적으로 채용 대학이 정하는 같은 해의 각 학기 개시일(9월 또는, 10월)부터 시작, 전후 2주 중 채용대학이 지정하는 날.
- (7) 비자 취득 : 일본 입국 전에 원칙적으로 국적 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유학」 비자를 취득하고,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때문에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신규로 입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 외국인유학생 신분 종료 후에 다시 「영주자」 또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해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해할 것.
- (8) 대상 외 : 다음 항목에 한 개라도 해당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 판명이 난 경우에는 사퇴할 것.
 - ① 7월 말일 시점에서 현역 군인 또는 군속 자적인 자.
 - ② 문부과학성 및 채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입국 후 사퇴자 포함)로 장학금 지급 최종 월의 다음달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 월까지 3년 이상의 교육 연구 경력이 없는 자. 다만, 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한(예정자를 포함)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그리고 일한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및 영리디프프로그램 유학생이 연구 유학생으로서 응모하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또한, 문부과학성 학습장려비(MEXT Honors Scholarship)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자국에 있어서 본 장학금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다만, 9월 말일 이전까지 확실하게 귀국하는 자이거나, 대학간 교류 협정 등에 의한 교환학생 또는 단기어학연수 등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사비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실시하는 입국 전 사전오리엔테이션(내년 3월 예정)까지 귀국이 확실하고,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새롭게 취득 후,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⑤ 장학금 지급 개시 후에 본 제도에 의한 장학금과 중복해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 예정인 자.
 - ⑥ 대학학부의 「졸업예정자」로, 소정 기일까지 학력의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원칙적으로 학부과정 재학 중인 자로, 10월 말까지 졸업예정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응모 시점에 대학의 학부과정을 휴학 중인 자.)
 - ⑦ 신청 시에 이중국적자는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일본국적 사퇴 희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본 입국 시까지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⑧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 이외로 변경한 자.
 - ⑨ 신청 시부터 일본 이외에서의 필드 워크, 인턴십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
 - ⑩ 박사과정 수료자 중,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 ⑪ 응시자가 공무원, 교원 등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 면접 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유학 허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
 - ⑫ 일본 장기 재류자. (2019년 4월 1일이전까지, 과거 5년간 합산하여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한 자와, 3년 이내라도 하더라도, 응모시점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 또는 재류 예정인 자. 다만, 응모시점에서 귀국 확인서를 제출하고, 9월 말일까지 귀국하는 자는 대상으로 한다.) 덧붙여, 신청 마감 시점에, 만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면접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그 출입국 사실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재류 기간이라 함은, 재류 자격을 취득하고 종료(귀국)시까지의 총 기간을 말하며, 이와 함께, 여행 등의 일시 체류자격으로 단기간 체제한 기간 등을 모두 합한 기간임.
 - ⑬ 응시자의 취득 전공과 유학 희망 전공분야의 관련이 많지 않은 자와, 해외 교육기관 출신자 등 개별접수 희망자 중에서 해당 기일까지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자.
 - ⑭ 대사관 주최 입국 전 사전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는 자. 또한, 지정기간 내에 현지에서 발급하는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⑮ 학점은행제도 등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대사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8월 첫째 주 이전까지 일본의 각 대학의 입학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제출해야 대사관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9) 기타 :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함과 동시에,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졸업 후의 양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는 등,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축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채용한다.

4. 장학금 지급 기간

- (1) 비정규생으로 재적하는 경우
 - 4월 입국 :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 9월 입국 : 2019년 9월 또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 두 경우 모두, 일본어 등 예비교육(이하「예비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포함한다. 상기 이외 입국의 경우, 별도 문부과학성에서 결정한다.
- (2)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
- 일본에 입국 시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각 과정의 표준 수업 연한은 「12. 진학 및 학위의 취득 (4)~(6)」을 참조)으로 한다.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별도로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5.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비정규생에서 정규생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으로 진학 희망자,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 심사를 받아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단,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

- (1) 비정규생으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는 없다.
- (2)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 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적하는 것은 가능.)
- (3) 비정규생으로 재적하는 기간 내에 정규 과정으로 진학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단, 2021년 4월 입학할 희망하는 경우는 귀국 여비 지급 신청을 포기한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4월 정규과정에 입학한 자가 소정의 기간 안에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귀국 여비는, 이하 「6. 장학금 등 (3). ②」와 같이 지급된다.

6. 장학금 등

- (1) 장학금 : 재적하는 과정에 따라서 하기의 금액을 지급한다. 단,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로 결석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① 예비교육기간 및 비정규생	월액 143,000엔
② 석사과정 및 전문직학위과정	월액 144,000엔
③ 박사과정	월액 145,000엔

*특정 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 월액 2,000엔 또는 3,000엔의 지역 수당을 월액 단위로 가산한다.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해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2) 교육비 :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검정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단,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합격이 된 경우의 입학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여비 :

- ①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 국내)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항공기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도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국적 국에 재외공관이 소재하지 않아,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국적 국에서 직항편이 없는 자에 대하여, 연계 국내 여비,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적 국에서 거치는 국가까지의 항공편과 그 국가에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 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나, 일본 입국 전에 국적 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일본 입국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판단,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또한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기 사정에 의해, 국적 국 이외에서 일본에 입국 할 경우,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종료하고, 문부과학성이 정한 장학금 지급기간(상기 4. 장학금 지급기간 참조)의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장소의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 국적국내)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국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품, 추가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주 1) 「5. 장학금지급기간의 연장 (3)」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2021년 4월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신청을 행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고 귀국하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충분히 유의할 것.

(*주 2) 본인 사정 및 7. 장학금 지급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 3)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예: 일본에서의 취직), 일시 귀국하는 경우의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모두 반납을 명한다.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부정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 기관에서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 (채용기관에서 학칙에 준하여 징계처분으로 퇴학, 정학, 훈고 및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된 것을 제외한다.) 지급을 받았을 때.
- ⑧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할 때.

8. 제1차 선고(선고일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대한민국 모집요강을 참조할 것)

- (1) 재외 공관은 서류 심사, 어학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해, 제1차 선고를 실시한다.
- (2) 어학 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반드시 전과목을 수험할 것. 일본어 시험 결과는 일본 입국 후의 일본어 예비교육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한다.
- (3) 각 선고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서류 및 서류 심사**: 대학 학부를 포함 최종 출신학교 평균성적이 각각 70%이상의 성적일 것, 또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것.

A. **서류 접수 및 방법**: 제출 서류는 아래 9. 응모 절차 (별표 1) 제출 서류 참조.

(A) **제출 마감**: 5월 25일(금) 16시 이전까지

(B) **결과 안내**: 6월 7일(목)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기시험 대상자 수험번호 발표 예정. 덧붙여,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는, 각 대학 등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5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 개별접수자는 개별 통보 예정.

B. **대상 인원**: 시험 장소 제한 등에 의해 약 200명 이내를 필기시험 대상자로 결정할 예정.

C. **심사 방법**: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출된 서류 중, 각 응시자 학교 성적 및 연구계획 등을 심사하여 필기시험 대상자를 결정 (대상자의 결정은, 학부 및 대학원 등의 전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함.)

② **필기 시험**:

A. **시험 일시**: 6월 10일(일) 12:00-18:30 예정.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시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 등 상세내용 안내 예정이며 시험 장소의 경우, 정해진 인원 이하에 해당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바람. 수험번호 통보 시 해당 학교로 5월 말까지 안내 예정.)

B. **시험 장소**: 서울대신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출구 5분) 및 주재주일본국총영사관 예정.

C. **대상 인원**: 서류선고 합격자 (단, 추후에라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함).

D. **선고 내용**: 일본어와 영어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성적 상위인 자로, 각 과목 평균 성적이 50점 이상일 것.

(A) **문과계**: 일본어, 영어 필기.

(B) **이과계**: 일본어, 영어 필기+수학 필기(자격시험으로 40점 이상일 것 과목은 학부 수학 B 수학 정족수 부족 시 수학 성적 35점 이상자 중에서 보충할 수도 있다)

E. **선발 방법**: 응시자는 각 지원 분야 문과계와 이과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면접 대상자 결정은 응시자의 비율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F.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흑색 볼펜) 등.

G. **결과 발표**: 7월 첫째 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대상자의 수험번호를 발표 예정.

③ **면접시험**: 일본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대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을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

A. **서류 접수 및 방법**: 아래 9. 응모 절차 (별표 2) 제출 서류 참조.

B. **면접 일시**: 7월 18일(수) - 24일(화) 예정.

C. **면접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정.

D. **대상 인원**: 50-60명 이내 (변동 가능).

E. **선고 내용**: 연구계획, 학교 성적, 추천서 등. 제출서류, 유학의지, 인성, 잠재성 등.

(A) **문과 이과 각 분야별 면접 실시**. 면접 시간은 1인당 약 10~15분 정도.

(B) **최종 필기선고 30%, 서류심사 30%, 면접심사 40%**를 합산하여 성적 상위자 결정.

F. **준비물**: 면접에 적당한 복장일 것. 신분증 및 수험표를 지참하여 수험표는 좌측 흉부에 부착할 것.

(4) **제1차 선고의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하고, 채택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선고에서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A. **서류 접수 및 방법**: 아래 9. 응모 절차 (별표 2) 제출 서류 참조.

B. **결과 발표**: 면접 후 3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1차선고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발표 예정.

C. **추천 인원**: 미정. (과거 실적, 2018년도 30명 채용).

(5) 제1차 선고의 결과는, 제2차 선고와 대학배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9. 응모 절차

응모자는, 아래 서류를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1) **필기 응시자용 제출 서류**(아래 추천 마감은 대사관 제출 마감일이므로 응시자의 서류 제출은 그보다 일찍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응시자의 종류 및 서류제출**: 제출 마감: 2018년 5월 25일(금) 16시 이전까지

A. 응시자 구분:

(A) 일반 응시자:

- 가) 국내 학부 재학자 중 졸업 예정자
- 나) 국내 학부 졸업자 및 대학원 재학자 등

(B) 개별 접수자:

- 가) 해외 교육기관 출신자
- 나) 기타 대학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되어 대사관으로부터 개별접수 허락을 받은 자

B. 응시 및 서류 제출:

(A) 일반 응시자: 국내 출신 대학 담당 부서(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포함. 또한 학부와 대학원이 다를 경우에도 가능한 수료한 학부에 신청해야 함)

(B) 개별 접수자 및 현재 일본 거류자: 사전에 개별접수 가능여부를 문의바람.

가) 모집 개시부터 개별접수 허가 마감일 이전까지 이메일 yuhak@so.mofa.go.jp 로 개별접수 문의

나) 개별접수 허가서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다) 학교장 공문서를 개별접수 허가서로 대신하여, 추천 학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함

(주) 상기 (A), (B) 중, 응모시점에서 일본 재류자 등 사전 허가:

일본의 교육 기관 등에 재적 중인 자와 일본에 재류 자격 소지자로 응모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 중인 자는 마감일 이전에 사전 허가를 받고 기일 내에 귀국 할 수 있어만 응모 가능하며, 일본 재류자의 사전 허가는 5월 17일(목) 16시 이전까지 이메일 (yuhak@so.mofa.go.jp)로 문의하여, 허가서 양식을 받아, 내용을 작성하고 마감일 이전까지 사전 허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응시 가능하다.

②. 제출 마감 및 제출 방법: 2018년 5월 25일(금) 16시 이전까지. 제출 서류: (별첨 PS 참조. 2019. 연구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

A. 별표 1의 A. 추천 학교용 제출 서류: 반드시 추천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추천할 것.

(A)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합하여, 결제 후 제출

(B) 제출 서류:

가) ① 학교장 공문서(기관 양식, 학교장 명의 공문서)

나) ⑥ 각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별표 1의 B. 응시자용 제출 서류 참조)

다) ③ 추천자 리스트(엑셀 파일 양식)

라) ④ 응시자 사진파일(반드시 컬러 200dpi로 스캔)

(C) 제출 방법: 별표 1의 B. 응시자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해당 학교가 대사관에 제출.

가) 별표 1의 ① 학교장 공문서와 각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B. 각 응시자용 제출 서류 일체를 **흑백** 200dpi pdf로 스캔

나) ③ 추천자 리스트 데이터파일을 작성하고, ⑥ 응시자 사진파일을 만들어진 **스캔 컬러** 200dpi pdf로 스캔하여.

다) 모든 파일(①+ ⑥+ ③+ ④)을 추천하는 학교명.zip파일로 압호를 넣어 압축하여.

라) 추천 학교 담당자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주한일본대사관 담당자 전자메일(kyuho.cho@so.mofa.go.jp)로 제출. 단, 메일이 안될 경우 우편도 가능. (사전에 전화 문의 바람)

마) 접수 확인 압호 요청 메일을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후, 압호를 대사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바) 대사관으로부터 각 수험자의 접수번호 및 수험번호를 확인하여 수험자에게 안내.

B. 별표 1의 B. 응시자용 제출 서류:

(A) 제출 마감: 추천 학교가 정한 기일까지(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B) 제출 서류:

가) ⑥-1 응모신청서(사진 2매 부착, 1매는 해당 학교가 수험표 양식에 부착)

나) 사진 2매(여권용)

다) ⑥-2 성적증명서(접수마감일 이전까지의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라) ⑥-3 졸업/졸업예정증명서(접수마감일 이전까지의 대학 대학원 전체 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단, 학부 대학 재학중인 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는 재학증명서와 함께, ⑥-1. 응모신청서의 8. 졸업예정자 추천 학교 담당자 확인란에 추천자 서명을 받아 제출 할 것

마) ⑥-4 연구 연구계획서(현재까지의 전공내용과 유학 희망 대학에서의 전공희망 분야 및 연구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A4 3-4매 정도로 작성)

바) ⑥-5 연구 전공 불일치 이유서(해당자만, 취득 전공과 희망전공분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문 A4 2매 이내로 작성하고 반드시 성적증명서에 희망전공분야와 관련된 있는 취득 과목에 밑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C) 제출 방법: 응시자가 아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가) 별표 1의 B. 응시자 제출서류 전체를 작성하여.

나)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응시자가 직접 제출

C. 별표 1의 C. 개별 접수자용 제출 방법: 개별접수 희망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대사관에 제출.

(A) 제출 마감: 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본인 서류를 수합하여 제출.

(B) 제출 서류:

가) ③ 개별접수자 허가서(대사관 양식, 사전에 허가 번호를 부여 받은 것).

나) 별표 1의 C. 개별접수자용 제출서류 일체.

다) 추천자 리스트(엑셀 파일 양식, 본인이 직접 작성).

(C) 제출 방법: 상기 A. 별표 1의 A. 추천학교용 제출 서류를 참조하여, ① 학교장 공문서 대신, ③ 개별접수자 허가서를 첨부함.

(별표 1)

No.	제출서류종류	A 추천학교 용	B 응시자용	C 개별접수 자용	비고
①	학교장 명의 공문서	pdf			학교 양식(전자결재서 또는 내부결재서 등의 사본도 가능)
②-1	연구·응모신청서	pdf	○√	○√	2019년도 양식 사용.
	*응모 신청서에 사진 2매 부착		○	○	연구용 사진 2매 √/부분 사진 2매 부착
②-2	대학 대학원 전체 성적증명서	pdf	○	○	(주2)가능한 성적 100분위간 적혀있는 서류
②-3	대학 대학원 전체 졸업/졸업예정/재학 증명서	pdf	○	○	학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3) 참조
②-4	연구 연구계획서	pdf	○	○	2019년도 양식 사용 (주4) 참조
②-5	연구 전공불일치 사유서	pdf	●	●	취득 전공과 희망전공분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출 (주5) 참조
③	추천자 리스트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2019년도 데이터 양식 사용. 추천학교 작성용 엑셀파일 데이터 (주6) 참조
④	응시자 사진 파일	pdf			(주7) 참조. 사진 파일을 작성자 사진 부착하여 스캔하여 제출
⑤	개별접수자 허가서(대사관 양식)	-		●	2019년도 양식 사용(주8) 참조. 해당자만

*참 고: pdf 는 스캔, ○는 원본서류, √ 는 사진 부착, ●는 해당자만,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파일만 제출.

- (주 1) 상기 제출 서류 양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 사용할 것. 또한 별표 1의 제출 서류는 국문 영문 모두 가능.
 (주 2) 대학을 포함 응모시점에 수렴 가능한 모든 성적증명서를 제출. 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가능한 대학 및 대학원의 모든 성적증명서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주 3) 학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②-1 응모신청서의 8. 학부 재학자 졸업예정 확인란에 해당 학교 담당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
 (주 4) 지금까지의 취득한 전공분야와 희망 전공 분야가 관련이 많지 않은 자나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②-4 양식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A4 1-2매 정도로 작성.
 (주 5) ②-5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국문 A4 2매 이내로 작성하고 반드시 성적증명서에 희망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취득 과목에 밑줄을 표시하여 제출.
 (주 6) 추천자리스트 데이터 파일은 해당 학교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할 것.
 (주 7) 해당 파일 내용(추천연번, 응시자명, 생년월일)을 작성 출력. B. 응시자용 제출 서류 중 ②-1 응모신청서에 부착된 사진 중 하단 사진 1매를 떼어 본 서류 사진 첨부 부분에 부착하여 컬러 스캔(컬러 200dpi pdf. 수협포용)하여 저장(파일명: 학교명+응시자 사진) 제출.
 (주 8) 개별접수자는 반드시 개별접수 허가 증명서류를 받아, 학교 공문서를 대신하여 ③ 추천자 리스트에 개별접수 허가 번호를 기입.
 (주 9) 별표 1의 모든 제출 서류는 국문 영문 모두 가능.
 (주 10) 상기 서류 양식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2) 면접 대상자용 제출 서류: 본 서류는 **면접 대상자가 직접 제출함.**

① 서류 제출 마감: 7월 초순(면접대상자 안내 시 상세 내용 안내)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출.

② 제출 서류 및 방법:

A. 제출 서류: 별표 2의 서류 ①~⑫까지의 서류 일체

B. 제출 방법: ①~⑫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고, ⑫는 본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담당자 전자메일주소로 제출.

(별표 2)

No.	제출서류종류	④면접 대상자용	⑤제1차 합격자용	비고 (복사본은 2부로 제1차합격자만 제출)
①	신청서	○√	○	2019년도 양식 사용 (주4), √부분 사진 1매 부착
②	배치희망대학 신청서	○	○	2019년도 양식 사용 (주4)
③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	○	2019년도 양식 사용 (주5)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	출신 대학 또는 해당 국 정부가 발행 한 것 (주6)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	학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주7)
⑥	최종 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 교사의 추천서	○	○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주10)
⑦	건강진단서	○	○	2019년도 판 양식 사용. 면접대상자만 제출
⑧	●논문 개요 등	●	●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사람 만 제출 (주 8)
⑨	●어학능력 증명서	●	●	어학관련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제출 (주9)*원본은 필요 없음
⑩	●직장 상사의 추천서	●	●	현재 직장에 붙어 있는 자만 제출.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주10)
⑪	●작품의 사진 또는 연구 녹음 전자 매체 등	●	●	미술·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만 제출
⑫	연구 면접대상자 엑셀파일	데이터	-	2019년도 양식 사용. 면접대상자만 제출

*참 고: ○는 원본서류, ○는 복사본, √ 는 사진 부착, ●는 해당자만,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파일만 제출.
 제1차합격자의 경우, 복사본은 2부 제출해야 함으로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해야 함.

- (주 1) ●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호치키스 절대 금지. 클립만 사용.
- (주 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국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 (주 3)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① ~ ㉓까지 신청서류 번호(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또한, 서류가 1매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의 맨 마지막 페이지 우측 상단에 신청서류 번호(표의 No. 참조) 바로 옆에 매수를 표시(예: 신청서와 같이 2매 이상일 경우 1/5, 5/5와 같이 모든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도 적을 것). 그리고 ㉔ 연구 면접대상자 엑셀파일 데이터는 이메일 kyuho.cho@so.mofago.jp 로 제출.
- (주 4) 신청서 및 배치희망대학 신청서는, 2019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총 1매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로 사진 전용지에 인화한 것으로 크기는 3.5×4.5cm 상반신·정면·탈모할 것(여권 사진을 사용해도 무관). 또한 사진의 뒷면에는 국적 및 성명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에 가공하지 않은 여권용 원본 사진 데이터를 첨부하여, 선명한 화질의 및 컬러로 인쇄한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복사 또는 일반 프린트로 출력하여 부착하는 것은 불가. 복사본은 원본에 사진 부착 후 복사할 것. 또한, ㉑ 신청서 의 21. 일본어능력(자격) 및 22. 영어능력(자격)란에 기입한 경우 그 증명서류 복사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 (주 5)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대학 배치 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019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상기 별표 1의 ㉒-4 연구 연구계획서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상이(연구 분야 등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경우 등)할 경우 서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주 6)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는, 대학 학부, 대학원의 학년마다 취득한 전과목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위취득증명서나 단순히 몇 단위(학점)로 졸업 등의 졸업증명서는 대응 할 수 없다.) 증명서 원본이란, 해외유학도로 각 소속 대학 또는 정부기관이 직접 발행한 관인 또는 압인이 반드시 찍혀 있는 것. 우체국 및 인터넷 민원 등으로 발급받은 것은 불가.
- (주 7) 출신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으로도 대응 가능(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출신대학의 책임자 또는 해당국 대사관(국의 대학 출신의 경우)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는 제출하지 말 것. 우체국 및 인터넷 민원 등으로 발급받은 것은 불가.
- (주 8) 학위 논문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다. 학력 관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 (주 9)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신청서의 이름 및 해당 자격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 (주 10) 추천서의 경우 양식은 자유이며, 샘플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 (주 11) 모든 서류는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해 둘 것.
- (주 12) 최근 5년간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한 자 또는 재류 중인 자는 출입국기록 증명서를 면접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할 것.
- (주 13) 상기 서류 양식은 Study in Japan 홈페이지(http://www.studyjapan.go.jp/jp/smap_stop1-applicationsruts.html)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사용. ㉔ 연구 면접대상자 엑셀파일은 면접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예정.

(3) 제1차 선고 합격대상자용 제출 서류: 별표 2의 ㉔ 제1차 합격자용 서류를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제출.

① 서류 제출 마감: 8월 초순(제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제출.

② 제출 서류 및 방법:

A. 제출 서류: 별표 2의 서류 ㉔ 제1차 합격자용 서류 일체.

B. 제출 방법: 제1차 선고 합격자 발표시 지정된 기일에 대사관에 내방하여 작성 제출.

10. 입학 허가서 등의 취득

- (1) 제 1차 선고 합격자는, 제 1차 선고 발표 후부터, **8월 24일(금)까지**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동시에 최대 4개 대학까지)과 직접 연락을 하여, 대학원의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이라고 한다.)의 발행 의뢰를 할 것. (8월 25일(토) 이후에 일본의 대학으로 입학허가서 등의 발행 의뢰를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8월 24일(금)은 입학허가서 등의 발행 기한이 아니므로, 대학에 화답을 재촉하지 말 것) 단, 회답예정 시기를 지난 경우 확인은 가능. 또한, 통상 대학은 회답에 한달 정도 필요하기에 계획적으로 발행의뢰를 행할 것. 또한 입학허가서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 연락처와, 대학 연구자의 검색 사이트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 (2) 대학에 입학허가서 등을 의뢰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대학으로 직접 제출 할 것.

【「9. 응시절차」의 재외공관에 제출 서류 일체를 재외공관이 확인도장을 찍어 반환한 것(사본)】		
	No.	서류종류
	①	신청서
	③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④	최종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⑤	최종 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⑥	재적대학 또는 최종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교원 추천장
	⑧	학위논문개요 등
	⑨	어학능력증명서 (※재외공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⑩	직장상사의 추천서 (※ 재외공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⑪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 녹음 전자 매체 등
	【재외공관에서 발행된 제 1 차선고 합격증명서 (사본)】	

이 외, 대학에서 지시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할 것. ㉔ 배치희망대학 신청서 및 ㉕ 건강진단서는 절대 제출하

지 말 것. 기본적으로 대학에 제출서류 일체는 전자매체로 하여, 전자메일로 발송해야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도 인정한다. ①, ③~⑥, ⑧~⑪에 확인 도장이 없거나, 서류의 문자와 사진이 불명확 또는 제 1차 신고합격증명서(사본)의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대학은 입학허가서 등의 발행 의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

- (3) 대학으로부터 회답 현황은 수시로 재외공관에 보고할 것. 또한, 대학에서 회답 상황을 근거로, 최종적인 「배치희망대학 신청서」를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할 것. 또한 수락 불가라는 회답이 있는 대학은 「배치희망대학 신청서」에 기입하지 말 것.
- (4) 일본입국 시기가 4월, 10월 어느 쪽도 상관없는 자일지라도 대학의 입학허가서 등에 기재된 일본입국 시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잘 확인 할 것.

11. 제 2차선고와 대학배치

- (1)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의 제 1차 선고의 결과에 근거, 제 2차 선고를 실시, 배치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또한, 신청자를 수용함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 된 기술 제공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신청자가 경제산업성이 만든 외국 사용자 목록 게재 단체에 소속 된 자로서 이 사람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관련 기술이 제공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 (2) 대학배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이며,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한 제 1부터 제 3회망 대학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배치 협의를 행한다. 협의 결과, 대학에서 승낙을 받는다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이 공사립인 경우, 수업료 등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예산 제약이 있는 등, 배치희망대학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순위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3) 대학원 정규과정의 입학허가서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생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정규과정으로 배치한다.
- (4) 제 1차 선고의 어학필기시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대학에서의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를 받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배치대학이 판단한 경우에는, 최초 6개월간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 등의 예비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일본어 교육을 받는다. 일본어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으로 입학한다. 다만, 예비교육기관에서 성적이 불량하고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4. 장학금 지급기간 참조)
- (5) 유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배치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대학에 직접 입학 한다.
- (6) 최종 채용 여부 결과 및 피 채용자 대학 배치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체로 12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통지된다. 채용 여부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 대학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진학 및 학위 취득

- (1) 비정규생에서 대학원의 정규 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수험하여 합격하면 진학할 수 있다. 다만, 진학 후도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을 인정받아야 한다. (5. 장학금 지급기간 의 연장 참조.) 덧붙여 비정규생으로 재적한 채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2) 비정규생에서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생으로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학생의 전문분야와 능력 등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입학허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대학원의 입학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나, 외국어, 전문과목, 논문 등이 부과된다.
- (4) 일본의 학교제도 상, 석사과정은, 통상 대학졸업 후(학교교육에서 16년의 과정을 수료 후)의 2년 과정이며, 또한,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의 3년 과정이다. 이 기간을 재학하고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여 연구논문을 제출 후,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학위가 수여된다.
- (5) 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나 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의 박사과정뿐이다. 이 경우, 입학 자격은 학교 교육에서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학교교육에서 과정이 16년인 경우는, 과정 수료 후, 대학, 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의 연구력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원이 전자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6) 전문직 학위과정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새롭게 제도화된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연한은 통상 2년이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가 있다. 수료하면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전문직 학위 과정 안에는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과정도 있어, 수업연한은 3년, 수료하면 법무 박사(전문직)의 학위가 수여된다.

13. 주의사항

- (1) 일본으로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과의 법제도의 차이,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입국 후 장학금을 수령하는데 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필요하므로, 생활 자금으로서 대략 필요로 하는 비용을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한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일본의 금융기관의 것으로 한다.

- (4)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5) 숙소에 대하여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② 민간의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 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부양 가족(배우자나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의 숙소의 확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채용자가 일본으로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후, 동반 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채용 된 경우, 채용에 관한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 연구과 학부, 전공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 (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외국인 유학생을 소개 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을 결정할 때 제출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에서 본 취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방침에 대해 동의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한다.
- (7)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8)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외에 의문이 있다면 재외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 (9)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참고 연락처>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서류제출처>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조규호 앞
이메일(수신전용): kyuho.cho@so.mofa.go.jp

<일반 문의>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유학상담실
전화: 02-765-3011(145), 팩스: 02-742-4629, 전자메일: yuhak@so.mofa.go.jp